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[별지 제15호서식] <신설 2020. 6. 4.>

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

※ 해당되는 [ ]에 √표시를 하고,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
신청인	성명	주민등록번호
	휴대전화번호(전화번호)	
과태료 부과 사항	적발 일시	적발 장소
	과태료 납부 부과번호	
신청하는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	[ ] 교육(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감경)	
	[ ] 금연지원 서비스(과태료 전액 면제)	
	[ ] 보건소 금연클리닉 [ ]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	
	[ ] 집중치료형 금연캠프 [ ] 금연상담전화	

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4조제5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: 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유의사항

1.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 또는 최근 2년간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4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2회 이상 감면받은 사람은 해당 제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.
2.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여 과태료의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 동안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감면 절차가 중단되고 과태료가 전액 부과됩니다.
3. 이 신청서는 감면받으려는 과태료를 부과한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
4. 휴대전화번호(전화번호)는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의 신청 및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.

자 르 는 선

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접수증

접수번호(보건소 작성)	접수일시(보건소 작성)	신청인 성명(보건소 작성)

귀하의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.

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관인생략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]